

감사보고서

본인 등은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의 2020학년도 (2020.3.1. ~ 2021. 2. 28) 법인회계에 속하는 수입·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와 장부를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, 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음을 보고합니다.

2021. 4. 2.

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

감사인
김 촌호 (안)
김 생경 (인)

입회인 소속: 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 직: 법인실장 성명: 김 촌호 (인)

학교법인 정읍배영학원 이사장 귀하